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 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실채권의 매각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 증가 가능성 인정 등의 경우에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나.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10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출을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재산이 대출금 상환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3(부실채권의 매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 회사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대출을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재산이 대출금 상환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u>2. 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능력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u> <u>③ 공단은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환</u>

<u><신 설></u>	<u>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 <u>제10조의3(부실채권의 매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 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 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361